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0. 강경숙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7.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 9.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2. 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경숙의원)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
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에 2,269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050건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증가로 교원의 심리적 안정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관련 비용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따라 교원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시 현행법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제29조의2제1항에서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서 관할청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에서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교육감의 자료요청 권한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제29조의2제4항에서 교육감이 2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항목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해당 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대해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등 조사항목을 특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따라서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도입을 위해서는 교원과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태조사에 필요

한 항목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교육감의 자료요청 권한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학교 등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여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행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등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현행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신

설하기 보다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도움되고, 교원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교사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 유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각 법률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법을 예시로 명시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3항).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건강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함(안 제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삭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실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하여야 한다”
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
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u> <u>1.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 비용 지원</u> <u>2.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u> <u>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u> <u>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조직 내</u>	<u>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u> <u>-----</u> <u>-----</u> <u>-----</u> <u>-----</u> <u>-----</u> <u>-----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 5. (개정안과 같음)</u>

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
이 교원의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
건강증진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
의 정신건강 증진
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원
의 정신건강 실태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구축할
수 있다.

<삭 제>

	<u>에 관한 조사를 2</u> <u>년마다 실시하고</u> <u>이를 정신건강증진</u> <u>사업 추진에 반영</u> <u>하여야 한다.</u> ⑤ <u>제2항에 따른</u> <u>위탁 및 지원, 제3</u> <u>항에 따른 협력체</u> <u>계 구축 및 제4항</u> <u>에 따른 실태조사</u> <u>의 방법·절차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삭 제>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 비용 지원</u> <u>2.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u> <u>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u> <u>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u> <u>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u>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